

제6장 논문 심사 기준 및 절차

제18조(심사 기준)

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에 대한 3인의 책임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와 투고 규정의 준수 정도를 바탕으로, 다음과 같이 해당 논문의 계재 여부를 결정한다.

1. 계재

심사위원 평가점수 23-25점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.

2. 수정 후 계재

심사위원 평가점수 19-22점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.

3. 수정 후 재투고

심사위원 평가점수 15-18점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.

4. 계재 불가

심사위원 평가점수 14점 미만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.

제19조(심사 절차)

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2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.

1. 1단계(심사위원 심사)

-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책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.
-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5영역(내용의 적절성[5점], 내용의 독창성[5점], 형식의 적절성[5점], 전개의 논리성[5점], 연구 방법의 적절성[5점])의 평가점수 합계를 기준으로 <계재>(23-25점), <수정 후 계재>(19-22점), <수정 후 재투고>(15-18점), <계재 불가>(14점 미만)의 판정을 내린다.

2. 2단계(편집위원회)

- 편집위원회에서는 3인의 책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합계에 근거하여 최종 계재 논문을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
- 투고자는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편집위원회 심의 결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.
- 재심은 책임 심사위원 이외의 3인의 심사위원으로 진행되며 재심 심사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.
- 투고 논문의 계재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평가점수 합계에 우선한다.

제20조(심사 시기)

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연 4회 (3월 · 6월 · 9월 · 12월)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1조(논문 계재호)

최종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계재호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동일 집필자의 연속호 계재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또한 집필자가 복수인 경우, 제1필자를 상단에 표기하고 공동필자는 하단에 표기한다.